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049 제출연월일: 2024. 6. 2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'보고'하도록 하던 것을,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'제출'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의2의 제목 "(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)"를 "(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지도·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"을 "지도·감독 결과의 제출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"보고"를 각각 "제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제22호 중 "보고"를 "제출"로 한다.

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1항제19호 중 "보고"를 "제출"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의2(공사업 현황 등의 보	제72조의2(공사업 현황 등의 제
<u>고)</u>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<u>출)</u> ①
은 시•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	
른 <u>지도·감독의</u> 결과에 대한	<u>지도·감독</u> 결과의 제출을
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	
②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	②
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	
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	
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<u>보고</u>	<u>제출</u>
하여야 한다.	·.
③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	③
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	
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
에게 <u>보고</u> 하여야 한다.	<u>제출</u>